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14

발의연월일: 2021. 1. 25.

발 의 자:이채익・윤영석・정희용

곽상도・성일종・태영호

김기현 · 신원식 · 이명수

서범수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 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하지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을 상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대학의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시연령

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 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혼일 것"을 "미혼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제3조(입학자격) ①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u>미혼</u>	1 <u>미혼</u>
일 것 <단서 신설>	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2. ~ 4. (생 략)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u> 상한을 연장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